

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0. 8. 5.>

특정범죄자 []치료기관 []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신청인	성 명 (대 표 자)			생년월일	
	법 인 명	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	
기관 명칭					
기 관 소 재 지				변경 연월일	
변경 사항	구 분	기관장 성명 (생년월일)	명 칭		소 재 지
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	구 분	대상 특정 범죄	치료 · 교정프로그램 담당자		연간 치료 · 상담치료 가능 인원
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[]기관장, []명칭, []소재지, []대상 특정 범죄, []치료 · 교정프로그램 담당자, []연간 치료 · 상담치료 가능 인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관의 장, 명칭, 연간 치료·상담치료 가능 인원이 변경된 경우: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(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가 변경된 경우: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·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.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경된 경우: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5.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(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